

14. 公共賃貸住宅建設 및 管理指針 改正

建設部 住宅政策課(30400-1491)

시행일 : 1993. 8. 19

가. 민간주택사업자가 재정지원없이 국민주택기금만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모별 건설의무비율(전체건설호수의 10%이상을 전용40%이하로 건설)을 폐지함.

나. 공급대상자중 특별공급대상자에 다음 항목을 추가함.

- (1)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5조제1항1호(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또는 유족) 해당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자.
- (2)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자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한함).